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7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22.

(3) 회 부 일 : 2025. 5.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u>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u><신설></u>	<u>제19조(기금의 재원)</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2. <u>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u> 3. <u>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u>
<u><신설></u>	<u>제20조(기금의 용도)</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u>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u>

<신 설>

<신 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 ⑦ (생략)

<신 설>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기금의 출연금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 외의 용도

<u><신 설></u> <u><신 설></u>	<u>로는 사용할 수 없다.</u> <u>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u> <u>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u> <u>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⑨ 제8항에 따른 사용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

2. 검토의견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정 당시, 편의시설 설치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되어, 2000년 5월부터 정부 출연금 30억원으로 조성 후, 2002년까지 약 3년간 운영되었으나, 2003년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상 폐지되었음.¹⁾

1) 유재규 의원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720호, 2003.10.10.)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16대 국회 제243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3.11.11.)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03.12.17.)를 거쳐 같은 해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

- 동 기금은 재원의 근거가 되는 편의시설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 2002년까지 누적 15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정부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 개정안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운용·관리 주체로 하며,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이행강제금의 50%,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홍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의 명칭, 자원 구조, 운용 체계 등 주요 사항 대부분은 2003년 폐지된 종전 기금과 대부분 유사하여, 사실상 기존 기금의 체계를 재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1: 개정안과 종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련 조문 비교).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기 금 명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 원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제24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기금 운용 수익금

구 분	내 용
용 도	•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 용 ·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³⁾의 규정 적용 제외
조 세 특 례	• 정부 외 출연·기부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 계산 특례 적용

□ 다만, 개정안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① 주요 재원으로 제시된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인 재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② 기금의 용도로 제시된 사업 대부분이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의 특성상 신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일반회계보다 기금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와 같은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⁴⁾에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따른 기금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 제시된 이행강제금은 「장애인등편의법」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⁵⁾이 편의시설 설치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실적은 총 12건, 약 1,800만 원에 불과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⁶⁾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

(2024.12.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0건	2건	3건	4건	3건	12건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	0원	4,407,330원	6,318,950원	2,984,000원	4,820,950원	18,531,230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6)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2023년 기준 약 89%로 높은 수준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적고, 시설주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바로 이행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많지 않다는 설명을 함.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를 통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작성,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 기금 용도와 유사한 사업들을 약 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같은 사업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수행되고 있음.

< 일반회계편의시설 관련 사업 현황(2025년) >

사업명	내용	예산(천원)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 標準圖)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방안 연구	20,000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4,000
	편의증진기술위원회	5,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민관합동점검	6,500
	합계	35,500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민간교육, 온라인교육, 법령집 등 자료제작)	19,000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지원(현장 업무 감독 및 지원)	3,000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시설기준 충족지원 및 적합성 심사대행 사업	40,000
	합계	62,000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증진 교육(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건축사 실무교육)	30,000
	UD인식확산사업(공모전, 국제세미나, 전시/체험)	359,000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4,280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	15,000
	합계	408,280
그 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 관련 사업	BF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44,600
	BF인증 사후관리(인증기관 합동사후관리)	40,400
	BF인증 제도개선 연구	3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운영기관 업무 수행	185,000
	합계	300,000
총 계		805,780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⁷⁾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580호, 2025.5.23. 회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 일정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서 기금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정부 출연금 외에 독립적인 기금 조달 재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기금 편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기획재정부

- 개별법상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맞지 않음.

7)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으며, 세제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정상황 및 세입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조세정책 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다.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개정시 지방소득세도 특례 적용 가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개정안과 종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련 조문 비교〉

조문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18조(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자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u>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u>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기금의 출연금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u>제19조제2항에 유사 내용</u>
제24조제8항 ~ 제10항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에 따른 사용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